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01호)
- 김태선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14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3

[의안번호 2216801]

I. 제안경위

2026년 2월 12일 김기웅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품의 제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재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의안번호 2217814]

I. 제안경위

2026년 3월 27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 폐기물의 배출 억제 및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기물에 대한 통계조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5년마다 실시되고 있어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여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두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재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수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용량 감소나 재질 개선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했던 기존 제도의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실태조사(점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회용품 등의 발생, 사용 및 제공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0조의4제1항), 실태조사(점검)의 내용에 사용량 변화, 재질 개선 또는 대체 제품 도입 여부와 유통·소비 단계에서의 관리 실태를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10조의4제2항), 조사·점검의 방법,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기웅의원안	김태선의원안
<신설>	제10조의4(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의 실태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사	제10조의4(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발생 및 사용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u>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의 사용 및 무상 제공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u>1회용품의 사용량 변화, 재질 개선 또는 대체 제품의 도입 여부</u> 2. <u>유통·소비 단계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관리 실태</u> 3. <u>그 밖에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	<u>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사용 실태를 연 1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u> 1. <u>제9조에 따른 포장 폐기물</u> 2. <u>1회용품</u> 3. <u>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및 사용 억제를 위하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u>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u>해당 폐기물의 사용량 변화, 재질 개선 또는 대체 제품 도입 여부</u> 2. <u>유통·소비 단계에서 해당 폐기물의 사용 및 관리 실태</u> 3. <u>그 밖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	--	--

	<u>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	--	--

두 개정안은 실태조사(점검)의 범위, 실시 주기, 법적 성격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김기웅의원안은 조사 대상을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¹⁾’으로 한정하고 점검 주기와 결과 공개 여부에 행정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김태선의원안은 조사 대상을 1회용품뿐만 아니라 ‘포장폐기물’ 및 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까지 광범위하게 지정하고 연 1회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 각 개정안 비교 】

구 분	김기웅의원안	김태선의원안
조사·점검 대상	1회 용품	포장폐기물 + 1회용품 + 추가 지정 폐기물
조사·점검 주기	정기	연 1회
조사·점검의 성격	재량	의무
결과 공개	재량	의무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²⁾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은 2019년 3억 5,300만톤에서 2050년 11억 2,400만톤으로 폭증할 전망이나 실질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한 실정이며, 유입된 플라스틱으로 인해 2050년에는 해양 플라스틱 중량이 어류 중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특히 소각·열분해 등 사후 처리 방식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지구 대기 온도 상승을 초래하므로, 환경·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 및 발생 단계에서의 원천적인 저감 정책이 필요함.

이러한 플라스틱 위기의 주원인은 수명 주기가 1년 미만인 1회용품 플라스틱의 급증에 기인하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부터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³⁾를 시행해 왔으나 소비·판매 형태의 다변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 여건을 기존 규정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2) 기후에너지환경부, 「1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2024. 3.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 현황 】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숙박업(50실 이상)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단속을 넘어 1회용품의 실제 사용량 변화, 재질 개선, 대체 제품 도입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계 관리 방안과 실태조사(점검) 체계 마련이 필수적임.

한편, 최근 온라인 쇼핑, 택배,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포장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감하기 위해 제품·수송(택배) 포장 규제를 시행⁴⁾하고 있으며, 1회용 택배 포장에 대한 규제⁵⁾는 2024년 4월 도입된 후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⁶⁾되고 있음.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5)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조(적용 범위) 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 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미만인 자가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별표 8]에 따라 포장기준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이러한 1회용 택배 포장 규제의 현장 안착 여부와 포장재의 사용량 변화 및 대체 제품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포장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실태조사(점검)의 대상은 1회용품에 국한하기보다 포장폐기물 등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① 현행법 제36조⁷⁾ 및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⁸⁾ 등에 따라 사업장 지도·점검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점검’보다는 ‘실태조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② 해당 조사의 목적이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실태조사 대상을 포장재와 1회용품 등으로 설정⁹⁾할 필요가 있으며, ③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 범위를 생산·배출·처리 단계로 세분화하여 단계별 내용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④ 조사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8)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7조(사업장의 지도·점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이하 ‘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조사 횟수에 해당하는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9) 실태조사 대상에 사용 후 폐기물(포장폐기물 및 그 밖에 폐기물) 및 사용 전 제품(1회용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범주 상 혼란이 존재함.

및 의견 진술 요청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8
